

# 인천지방법원

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18410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1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신기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3.2.8.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4. 6. 26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성영민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	70,000,000		2020.07.20.	2020.06.22.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권 자	2020.07.17.~ 2022.07.16.	70,000,000		2020.07.20.	2020.6.22.	2024.3.26.	
<b>&lt;비고&gt;</b> 성영민: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(등기일:2023.8.23.)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<b>비고란</b>										
공부상 제지층 제1호이나 현황상 B01호임.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18410

### [물건 1]

#### 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5-38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32번길 10-4

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

주택

1층 82.14m<sup>2</sup>

2층 82.14m<sup>2</sup>

3층 82.14m<sup>2</sup>

지하 78.76m<sup>2</sup>

####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지층1호

벽돌조

36m<sup>2</sup>

####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5-38

대 212.4m<sup>2</sup>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12.4분의 26.55

감정평가액

72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6.03.25	17,287,000	1,728,700
2회	2026.04.22	12,101,000	1,210,100
3회	2026.05.27	8,471,000	847,100
4회	2026.07.01	5,930,000	593,000

공부상 제지층 제1호이나 현황상 B01호임.